

대구지방법원 2015. 9. 11 선고 2015가단234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피고1. E

2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9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188.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지상에 축조된 폭 1.5m, 길이 15m의 조립식 판넬 가건물을 철거하고, 이 부분 대지 22.5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채성호

별지